

유럽연합의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유 찬 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식품·사료 긴급경보 시스템은 식품·사료 사고를 탐지하였을 때 식품 및 사료 관리 기관들로 하여금 대응 수단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다.

유럽연합은 일찍이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와 관련된 제도 중 하나인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은 식품·사료 등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역내 회원국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되고 있다.

1.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이란?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s, RASFF)은 식품·사료 사고를 탐지하였을 때 식품 및 사료 관리 기관들로 하여금 대응 수단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다.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식품·사료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건상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즉,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담당 집행위원회, 국가 차원에서는 회원국 간의 연락체계 담당처(contact points)를 분명하게 하고, 정보 교환시에도 간략한 기호(templates)를 사용하여 의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본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유럽연합은 2002년 1월 Regulation(EC) N° 178/2002를 통해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유럽연합은 2002년 1월 Regulation(EC) N° 178/2002를 통해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규제 제50조는 긴급경보시스템의 설립, 성격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회원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식품안전청(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집행위원회가 시스템을 관리한다. 여기에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들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도 참여하고 있다.

규제 제50조 제2항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이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경우 이를 집행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집행위원회는 이 정보를 네트워크 내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초동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럽식품안전청으로 하여금 과학적·기술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규제 제50조 제3항은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통보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다른 법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즉각 통보해야 한다.

- 해당 국가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취한 식품·사료 출하 금지 및 회수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입한 수단
-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 또는 사료의 실제적인 사용이나 시장 출하를 금지, 제한하거나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구한 조언이나 동의(자발적·의무적 경우 모두 포함)
- 법적 자격을 갖춘 기관이 국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여 유럽연합 국경에서 특정 식품이나 사료의 묶음(batch)·컨테이너·화물 유입을 중단시킨 경우

1) “이 항에 근거하여 식품 또는 사료에서 파생되어 인간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알리는 긴급경보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설립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회원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유럽식품안전청이 참여한다. 회원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식품안전청은 각각 연락과 접촉 기능을 수행할 주체를 결정하고, 이 주체도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네트워크 운영을 책임진다.”

3.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회원 현황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기구들은 근무 시간 외에 긴급한 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담당 직원이 사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상시 협정(7 days/7, 24 hours/24)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에 가입해 있는 회원국·기구는 다음과 같다.

〈표 1〉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네트워크 회원

국가	담당 기관	홈페이지
유럽연합	보건 및 소비자 집행위원회 유럽식품안전청	http://ec.europa.eu/dgs/health_consumer/index_en.htm http://www.efsa.europa.eu/EFSA/efsa_locale-1178620753812_home.htm
EFTA	EFTA 감독청	http://www.eftasurv.int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청 식품안전연방사무국	http://www.ages.at http://www.ages.at
벨기에	연방 식품체인 안전청	http://www.afsca.be
불가리아	농림부	http://www.mzgar.government.bg
사이프러스	보건부 의학·공중보건청	http://www.moh.gov.cy
체코	체코 농식품 검역청	http://www.szpi.gov.cz/cze/default.asp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http://www.uk.foedevarestyrelsen.dk/Forside.htm
에스토니아	수의·식품 위원회	http://www.vet.agri.ee
핀란드	핀란드 식품안전청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 농수산·식품·농촌부	http://www.minefi.gouv.fr/index.htm http://agriculture.gouv.fr
독일	연방 소비자보호·식품안전국	http://www.bvl.bund.de
그리스	그리스식품청	http://www.efet.gr/index.html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환경·식품청	http://www.mebih.gov.hu
아일랜드	아일랜드 식품안전국	http://www.ust.is/Umhverfisstofnun
이탈리아	보건부	http://www.ministerosalute.it
라트비아	식품·수의청	http://www.pvd.gov.lv

〈표 1〉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네트워크 회원(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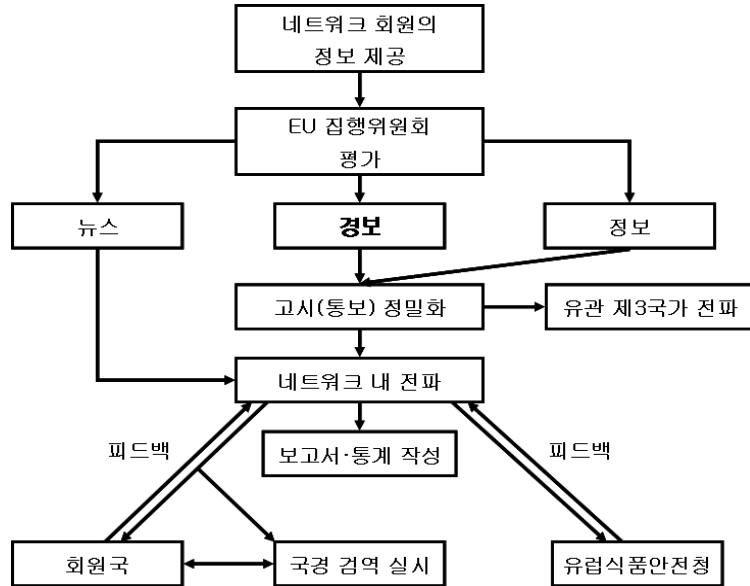
국가	담당 기관	홈페이지
리히텐슈타인	식품검역 · 수의청	http://www.llv.li
리투아니아	국립식품수의청	http://www.vet.lt/lt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안전청	http://www.securite-alimentaire.public.lu
말타	식품안전위원회	http://www.health.gov.mt/fsc/fschome.htm
네덜란드	식품 · 소비자제품안전청	http://www.vwa.nl
노르웨이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http://www.mattilsynet.no
폴란드	최고 위생검역관	http://www.gis.gov.pl
포르투갈	농수산 · 농촌개발부	http://portal.min-agricultura.pt/portal/page/portal/MADRP/PT
루마니아	국립위생수의검역 · 식품안전청	http://www.ansv.ro
슬로바키아	국립위생 · 식품부	http://www.svssr.sk
슬로베니아	보건부 슬로베니아 보건부 위생검역관	http://www.mz.gov.si http://www.zi.gov.si
스페인	보건 · 소비부	http://www.msc.es
스웨덴	국립식품부	http://www.slv.se
영국	식품기준청	http://www.foodstandards.gov.uk

식품·사료 등에서 위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최초로 발견한 회원이 이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4. 식품 · 사료 긴급경보시스템 운영 체계

식품·사료 등에서 위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최초로 발견한 회원국이 이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집행위원회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한편,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전파한다. 그리고 상황 추이를 반영하여 사태의 심각성과 통보 내용을 정밀화하고 즉각 네트워크 내 회원들에게 전파한다.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럽식품안전청 및 회원국들과의 피드백을 통해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운영 체계



5. 시스템 개요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은 세 가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회원국들의 안전성 관리를 지원한다.²⁾

경보 통보 (Alert Notification)



경보 통보는 시장에 출하된 식품·사료에서 위해 요소가 발견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발효한다. 문제를 감지하거나 리콜 등 관련 조치를 최초로 실시한 회원국이 경보를 발효한다. 경보 통보의 목적은 네트워크 내 모든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시장에 출하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경보 통보 대상이 된 제품이 회수되었거나 현재 시장에서 회수 중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은 세 가지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회원국들의 안전성 관리를 지원한다. 경보 통보는 시장에 출하된 식품·사료에서 위해 요소가 발견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발효한다.

2) 이 분류는 2008년 1월 1일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정보 통보는 시장에 출하된 식품이나 사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지만 다른 회원국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경우 발효한다.

국경 반송은 식품·사료 적송품이 역외 국경(external borders of the EU)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발효된다.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중 매체를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 통보 (Information Notification)



정보 통보는 시장에 출하된 식품이나 사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지만 다른 회원국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경우 발효한다. 문제가 된 식품이나 사료가 다른 회원국 시장에 출하되지 않았거나 시장 재고가 없을 경우 또는 리스크의 속성상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조치를 취한다.

국경 반송 (Border Rejection)

국경 반송은 식품·사료 적송품이 역외 국경(external borders of the EU)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발효된다. 이 조치는 유럽연합의 모든 역외 국경 검역소로 전파되어 통제를 강화하고 반송 대상 물품이 다른 검역소를 통해 재반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표 2〉 중국 멜라민 사태 사례

2007년 2월 미국에서 애완견들이 대규모로 앓거나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유관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하였다. 3월 중순 발표한 조사 결과 중국에서 불법 수입하여 애완동물 사료 생산에 이용한 밀 글루텐(wheat gluten)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밀 글루텐이 포함된 사료에 대한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다. 추가 조사 결과 중국에서 수입한 쌀 응축 단백질(Rice Protein Concentrate)에서도 멜라민, 그리고 멜라민과 관련된 화합물인 디클로로이소시아누르 산(Cyanuric acid)이 발견되었다.

이 사태는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에 2007년 3월 20일 '원인 불명 사고'로 최초 보고되었고, 4월에 멜라민이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4월 20일 동물영양 분과위원회와 4월 27일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분과모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밀 글루텐 및 쌀 응축 단백질 내 멜라민과 관련 화합물의 존재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기로 하였다.

멜라민 등을 포함한 중국산 밀 글루텐 및 쌀 응축 단백질, 기타 단백질 소스가 유럽연합에 수입되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예방 차원에서 대응을 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7년 5월 2일 회원국들에게 중국을 위시한 제3국가에서 수입한 밀·옥수수 글루텐, 옥수수분(corn meal), 대두 단백질, 쌀겨(rice bran), 쌀 응축 단백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집행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2007년 5월 8일 집행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에 식품·사료에 포함된 멜라민이 보건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긴급 질의를 하였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7년 6월 8일 자문 의견을 발표하였다.³⁾ 이에 근거하여 같은 날 멜라민과 관련 화합물이 발견될 경우에 대한 통일된 감시(harmonized enforcement)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식품체인 및 가축위생 분과위원회는 2007년 10월 22일 회의에서 통제 결과, 유럽식품안전청의 자문 결과, 중국 기관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강화된 수준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3) 이번 중국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같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사료 긴급경보 시스템은 역외 원산국에 통보함으로써 발견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제3국가로의 정보 제공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은 역외 원산국(third countries of origin)에 통보함으로써 발견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국가에는 집행위원회 교섭단(the Commission Delegation)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회원국에는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에서 직접 전파한다. 2007년에는 문제가 된 제품이 발견된 국가에 1,957차례 통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에서 발견한 상품·사료가 원산국외 다른 제3국가들에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통보한다. 2007년 이러한 정보를 306차례 제공하였다. ☐